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가단2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변론 종결2018. 11. 21.

판결 선고2018.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삼척시 ○ 전 188㎡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8. 7. 21. 접수 제7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2008. 7. 24. 접수 제811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H, I, J, K, L, M, N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9. 6. 26. 접수 제8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10년간의 토지사용료 6,000,000원을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시 ○ 전 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 7. 21. P 전 137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망 Q의 아버지 망 R은 분할전 토지 중 231/528 지분(이하 '망 R 소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Q은 1959. 10. 26. R의 사망에 따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77. 7. 13. 망 R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망 Q은 1977. 8. 25. S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8. 6.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1998. 5. 15. 망 R이 1967. 10. 27. 사망함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1. 피고 B, C, D, E, F, G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7. 2. 피고 B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Q이 2013. 2. 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K, L, M, N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분할전 토지 중 망 R 소유지분은 원고와 망 Q 등이 1967. 10. 26. 사망한 T의 상속인들로서 이를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망 Q이 망 T의 사망일자를 1959. 10. 26. 사망하였다고 허위기재함으로써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망 Q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인 망 Q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망 R 소유지분에 관하여 1977. 7. 13. 망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원고는 1998. 5. 15. 망 R이 1967. 10. 27. 사망함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8. 6. 25.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망 Q이 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1977. 7. 13.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인 1998. 5. 15.로부터도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Q의 망 R 소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등기말소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수정